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3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표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19. 접수 제144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C은 2019. 8. 14.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19. 접수 제14421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2019. 8. 14.을 기준으로 한 C의 대출액은 원고에 대한 채무 58,413,648원을 포함하여 총 107,488,467원이다.

라. 한편 2021. 3. 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61,354,926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60,900,000원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19. 8. 14. 기준 C의 총 채무액은 107,488,467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②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과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C의 자녀인 점, ② C이 연체하고 있었던 금액이 상당한 점, ③ 피고는 C이 대출이자 등을 납입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내지 주민등록초본 등만을 제출하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성

별지